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원 임용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외국인 전임교원(이하 “외국인 교원”라 한다)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교의 어학 및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전임교원 규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2009.7.22.개정)

제3조(자격)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원어민)으로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단 학사학위 소지자라 하더라도 강의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012.5.31.개정)
2.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자격을 부여 받은 또는 입국자격을 부여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기독교한국루터회 및 해외 자매 교단의 세례교인으로서 기독교한국루터회 교단 신학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단, 지원시 위 해당자가 없는 경우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한다. (2012.5.31.신설)

제4조(임용 및 재임용) ① 외국인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2.5.31.개정)

② 외국인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2012.5.31.개정)

③ 외국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 보수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계약으로 정한다. (2009.7.22.개정),(2012.5.31.개정)

④ 외국인 교원의 재임용 요건은 외국인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별지 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평점 8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2012.5.31.신설)

제5조(책임수업시간) 외국인교원의 매학기 주당 책임수업시간은 전임교원에 준한다. 단 외국인 어학담당 교원의 책임수업시간은 임용계약에 의해 별도로 정하며 책임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교 일반전임교원에 준하여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2013.12.23.개정)

제6조(보수) ① 외국인 교원의 보수는 비정년교원의 초임 연봉의 90% 이상으로 산정하여 연봉제로 지급하며, 예산범위내 별도계약에 의한다. (2019.10.24.개정)

② 외국인 교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주거지원비용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재계약시 예산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할 수 있다. (2019.10.24.개정)

④ 상여금과 수당 등은 지불하지 않는다. (2017.12.11.개정)

제7조(복무) 외국인 교원은 본교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다.

제7조의2(학생지도 의무) 외국인 교원은 학생지도 의무를 면할 수 있다. (2021.1.18.)

3-3-16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규정

신설)

제8조(실비지급등) ①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교통비 및 집기구입 등이 예산에 계상된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이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009.7.22.개정),(2017.12.11.개정)

② 외국인 교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본교의 여비 규정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8조의 2(사택 제공) ① 외국인 교원에게 사택을 우선 제공하며, 소정의 관리비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② 기타 사택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사택관리 규정'에 따른다. (2017.12.11.신설)

③ 사택 미입주 외국인 교원에게 대학 관련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사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21.1.18.신설)

제8조의 2(사택 제공) ① 외국인 교원에게 사택을 우선 제공하며, 소정의 임대료는 12개월 분할하여 연봉에서 공제한다.

② 기타 사택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사택관리 규정'에 따른다. (2017.12.11.신설)

제9조(구비서류) 외국인 교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9.7.22.개정)

1. 인사기록카드
2. 이력서
3. 외국인 등록증명서
4. 여권사본
5. 학력 및 경력증명서
6. 각종 비자 신청 구비 서류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루터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루터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아래에 명시된 각항에 대하여 상호간에 합의하며 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 조건

- 가. “갑”은 “을”을 본교에 전임교원 직급으로 임용한다.
- 나. “을”의 임용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개월간으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다. “을”은 주 4일 이상 출강하여야 하며, 주당 책임시간 수는 50분을 단위로 시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강의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초과강의 수당은 본교 초과강사료의 금액으로 한다.
- 라. “을”은 강의 이외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업무를 수임한다.

2. 대우

- 가. “갑”은 “을”에게 보수로 年 金 (₩)의 급료를 지급하되, 년 12개월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한다. 다만 소득액에 대한 세금은 국세법에 의하여 공제한다.
- 나. (1) “을”이 본교에 복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주거료 및 집기 구입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2) “을”이 공무로 인하여 국내·외를 출장할 때에는 “갑”은 본교의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 다. “갑”은 “을”에게 상여금과 수당은 따로 지불하지 아니한다.
- 라. “을”의 퇴직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서 지급한다.(2012.5.31.개정)

3. 복무

- 가. “갑”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 출강 또는 근무할 수 없다.
- 나. “을”은 본교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본교의 교육시책에 순응하며 본교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다.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